학 칙

(문의:기획관리부, 2026.8.1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주한 외국인, 해외교포 및 입학자격을 갖춘 내국인의 자녀들에게 미국형 교육제도에 준한 제반 교육을 목적으로 함

제2조 (명칭)

본교는 한국켄트외국인학교 (KOREA KENT FOREIGN SCHOOL)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5길 13 내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1. 유치원 1년
2. 초등학교 5년
3. 중학교 3년
4. 고등학교 4년

제5조 (입학자격)

본교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2. 해외 3년 이상 장기거주 또는 6학기 이상 외국의 학교를 재학하고 귀국한 내국인 <개정 2009.7.14>
3. 국적법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학교운영위의 승인을 받은 자 <신설2022.11.1>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급 수)

총 15학급으로 한다. 단, 각 학년 공히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급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학생 정원)

1. 본교의 학생정원은 학급당 25명 이내 총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09.7.14>
2. 각 과정별 학급수 및 학년별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6.8.1>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

제8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미국학교의 교과과정에 준한다.

제9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77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고사)

1.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과 해당과목 선생님의 책임하에 필요시마다 실시한다
2. 중, 고등학교는 해당 담당 과목 선생님의 책임하에 정기 중간 및 기말고사 이외의 필요시마다 실시한다.
3. 초등학교부터 전 학년은 매년 최소2회 MAP(미국NWEA시행) 시험을 치른다.

   <개정2022.11.1>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1조 (학년 및 학기)

1.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치원 K5
   ② 초등학교 1학년 ~ 5학년
   ③ 중학교 6학년 ~ 8학년

④ 고등학교 9학년 ~ 12학년

2. 학년은 2학기로 나누며 1학기는 8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이며,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월초까지로 한다. (해당 학사 일정에 준함) <개정 2022.11.1>

제12조 (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해당 년도 학사일정에 준함)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1,2,3조 준용 <개정2022.11.1>

2. 학교장은 제9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휴업일을 가감할 수 있다.
3. 제1항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항 발생 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신설2009.7.14>

제6장 졸업 및 수료

제13조 (수료) 본교의 수료, 졸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1. 각 학년 수료 또는 졸업을 일정할 때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사정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결석일수가 18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소정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2009.7.14>

제14조 (학위증) 삭제<삭제2009.7.14>

제7장 입학

제15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인 8월 중순 경으로 한다.

제16조 (입학)

본 학칙 2장 5조에 해당되는 모든 신입생은 학부형과의 상담과 평가시험을 치른 후 입학여부 및 학급배정 등을 학교장이 결정한다. <개정2022.11.1>

제17조 (전,편입학)

본교에 전, 편입학을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입생 선발과 같은 모든 입학절차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 (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입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성적표 (3년 이상)
3. 학생 및 학부모 여권 사본
4. 예방접종카드 사본
5. 추천서
6. 영문자기소개서
7. 출입국사실증명서
8. 외국 시민권 증명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9. 기타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개정2022.11.1>

제19조 (전, 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 편입학을 위해서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휴학, 퇴학 및 상벌

제20조 (휴학)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학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고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2.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기타 사유의 경우는 최대 1년이하로 한다. <개정2022.11.1>

제21조 (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한 자, 선행에 있는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

1.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2.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정학 및 퇴학으로 하며, 학교 교육위에서 결정한다.
3.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학교교육위로 7일이내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2022.11.1>

제24조 (퇴학 처분)

학생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4.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5.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자<신설2022.11.1>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25조 (수업료, 입학금, 기타비용 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 비용 징수는 매년 해당 연도 학교 예산에 맞추어 금액을 산정 결정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제26조 (체납자 조치)

1학기 이상 학비를 체납한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 후 학생의 출석 정지 및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장학금)

학생의 재정적 사정을 고려하여 성적과 서류 심사를 거쳐 학비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대체한다.

제10장 기타

제28조 (교장의 자격) 교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신설2009.7.14>

1. 학사이상으로서 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2. 해당국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
3. 박사학위 소지자<신설2022.11.1>

제29조 (교원의 임용기준 및 면직) <신설2009.7.14>

1. 교원의 임용기준은 해당국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한민국 외국인학교 교원 사증취득에 하자가 없는 자격 소지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면직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본교 교사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자

제30조 (학칙개정)

본교의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교육위의 심의 및 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단, 증원 등 주요한 인가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부칙 (1999.8.31)

1.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과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이 학칙은 199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7)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에 대한 경과조치)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에 대한 기준은 『외국인학교및외국인유치원설립운용에관한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기존의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외국인학교및외국인유치원설립운용에관한규정』 시행당시 재학중인 학생은 제5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한다.

부칙 (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년별 정원규정)

『외국인학교및외국인유치원설립운용에관한규정(2009.2.6시행)』의 경과조치로 인한 내국인학생 학년별 정원 30%규정은 2010.3.1일 이전 입학생이 재학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부칙 (2025.1.1)

(학년별/학급별/과정별 정원) 이 학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칙 (2026.8.1)

(학년별/학급별/과정별 정원) 이 학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1]

과정 및 학년		학급수	학생정원
유치원	K	1	9
소계		**1**	**9**
초등학교	G1	5	15
	G2		17
	G3		20
	G4		22
	G5		22
소계		**5**	**96**
중학교	G6	3	25
	G7		24
	G8		25
소계		**3**	**74**
고등학교	G9	6	33
	G10		33
	G11		32
	G12		23
소계		**6**	**121**
총계		15	300

KOREA KENT FOREIGN SCHOOL
Explore | Reflect | Apply

학 칙

2026.08.01

한국켄트외국인학교

KOREA KENT FOREIGN SCHOOL

SINCE 1993

Statement of Revenues and Expenses(2024-2025)

(Unit:1,000won)

Subject	Amount(Won)	Rate
1.Revenues	**6,628,199**	**100%**
1)Tuition	6,118,922	92.32%
2)Bus Fee	327,915	4.95%
3)Registration Fee	96,302	1.45%
4)Other Fees	85,058	1.28%
2.Total Operating Expenses	**5,706,035**	**86%**
A.Human Resources	2,790,240	42%
1)Salary	2,609,172	39%
2)Severance Pay	181,068	3%
B.Operating Expenses	2,915,795	44%
1)Resources Management	1,359,533	20.5%
2)Education Resources	532,014	8%
3)Tax & Utility Bills	656,222	10%
4)Other Expenses	368,025	5.5%
3.Balance	**922,164**	**14%**

Budget, Financial Report 2026.07~2027.06

SCHOOL FUNDING(Won)

Funding

Tuition	6,250,000,000	91%
Bus Fee	340,000,000	5%
Registration Fee	134,000,000	2%
Other Fees	133,000,000	2%
Total Funding	6,857,000,000	100%

SCHOOL OPERATING EXPENDITURES

Human Resources	2,860,000,000	42%
Severance Pay	300,000,000	4%
Resources Management	1,680,000,000	25%
Education Resources	890,000,000	13%
Tax & Utility Bills	620,000,000	9%
Other Expenses	365,000,000	5%
Reserve Fund	142,000,000	2%
Total School Operating Expenditure	6,857,000,000	100%

School Operating Surplus/(deficit)

Remainging fund of 2025-2026 SY	714,585,779

:Expected to be used for facility equipment, vehicle transport, and school supplies during 2024-2025 school year.